

# 무역업무의 자동화

崔 永 學\*

## 1. 무역자동화 개요

### (1) 개 념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라 함은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문서의 작성과 전달’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식 대신에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전자문서화한 후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전송처리’함으로써 문서없는 무역절차(Paperless Trade)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무역업무 처리방식과의 비교〉

구 분	현행 방식	무역자동화 방식
업무처리수단	문서(Paper Document)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
법적 효력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달방법	인편·우편	컴퓨터간 통신
전달의 매개	없음	무역자동화사업자(VAN사업자) ※ 무역거래당사자와 무역자동화사업자간 전달관계만 존재
전달장비	사람(교통수단), 우체국	컴퓨터, 통신회선

\*商工部 貿易政策課

### (2) 무역자동화에 적용되는 기술

무역자동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수단의 발전 단계중 가장 첨단수단인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이 적용되며, 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은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상업서류와 행정서류 대신에 표준화된 전자문서 무역거래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통신회선을 통하여 교환하는 전자식 자료교환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당사자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문서화하는 표준화작업과 물리적인 문서 대신에 전자정보화된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 정보통신수단의 발전단계

인편→우편→전화→Telex→FAX→On-Line→Data 통신→EDI

### (3) 무역자동화 추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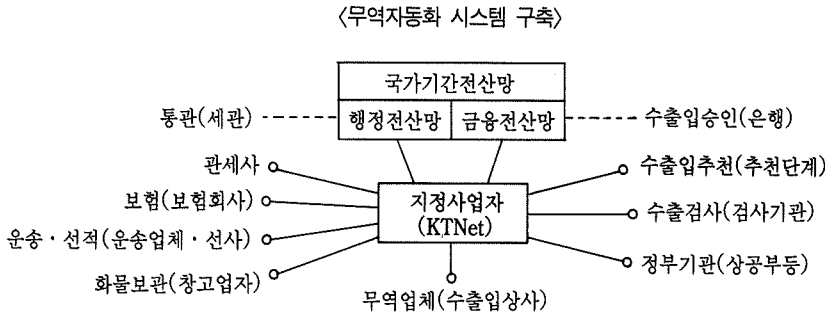
무역자동화 추진유형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종합무역자동화망을 구축하고 무역유관기관 및 무역업체가 종합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통합추진방식과 EDI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정보

통신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무역회사, 유관업체 사이에 신속한 무역정보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무역자동화망을 구축하여 부분적인 무역업무를 EDI로 처리하는 개별추진방식의 2가지가 있다.

전자인 통합추진방식은 대부분 EDI기술이 민간부문에 보편화되기 이전에 채택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종합무역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스웨덴·호주·뉴질랜드·EC(추진중) 등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다.

후자인 개별추진방식은 EDI기술이 민간부문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회사 사이에 필요에 따라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중복투자 와 EDI 서비스를 개별화할 수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관련 정보처리망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어 이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중이다.



## 2. 무역자동화 추진의 필요성

### (1) 국제적 무역자동화 추세에 대응

무역자동화는 현재 유엔 유럽경제이사회(UN/ECE)를 중심으로 하여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영국·싱가포르·스웨덴·호주 등 EDI부문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EDI방식으로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무역자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외국의 무역업자들은 EDI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994년 1월부터 국내 VAN시장이 외국기업들에게 개방되면 세계적 규모의 VAN사업자(IBM, GEIS)들이 무역자동화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무역자동화사업이 외국의 대규모 VAN사업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

### (2) 국내 무역자동화 수요에 대응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연평균 13% 이상(1980~1990)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에 의해서는, ① 수출입업무 처리시간 지연, ② 수출입건수 증가에 비례한 인원 증가 필요, ③ 부대경비 급증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어려움에 직면케 될 것이며, 무역업체가 수출입업무를 처리할 경우 현행 26종의 무역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데 19~28일이 소요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무역자동화를 통하여 수출입업무 처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증대와 수입합리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간 화물의 흐름은 신속해진 반면에 국제간 서류의 흐름은 지연되어 항만에서의 화물적체가 심각한 실정이며, 국내적으로도 내륙운송의 심각한 교통적체로 인해 무역업무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송비가 많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운전수, 운전장비의 소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 화물의 원활한 유통 및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추진됨과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각종 절차의 전산화를 통하여 인구가동량의 최소화 및 장비·인력 등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내에 해소할 수 있는 무역자동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EDI가 도입되면 지방의 무역업체들로 하여금 EDI망에 의해 전국 어디서나 무역업무를 즉각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역업체의 지방분산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무역자동화 추진

#### (1) 기본방향

무역자동화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첫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제반 절차의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을 뒷받침하며 무역자동화 도입시 해결하여야 할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둘째 무역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무역제도 개편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정보망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역자동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셋째 무역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정사업자를 지정하고, 넷째 무역자동화시스템의 설계·구축 및 확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다섯째 무역유관기관

및 무역업체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여섯째 무역자동화의 선결과제인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 등이다.

#### (2)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및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대한 보완관리,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지정 및 법적 지위 부여와 무역자동화에 필요한 무역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2. 12. 31)되었다.

동법률의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무역자동화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무역업무에 대한 자동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현행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 대신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 자동화방식으로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무역업자와 무역유관법령 등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를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며, 넷째 전자문서의 위조 및 변조와 그 내용의 누설 등을 방지함으로써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역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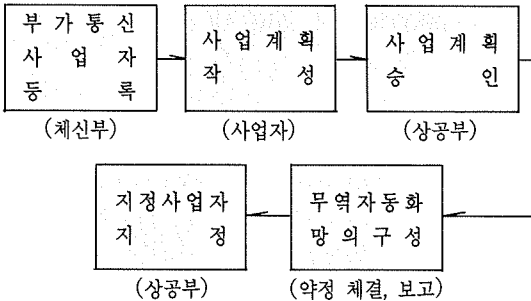
#### (3)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 지정

무역자동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지정사업자의 지정은 무역자동화의 조기추진과 안정적인 추진조직 구축을 위하여 국내 VAN이 개방되는 1994년 1월까지 1~2개만을 지정하고, 1994년 1월 이후 무역자동화 기반구축 정도 및 경쟁도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개의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사업자의 지정요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 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무역유관기관 및 무역업자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고, 사업을 행하는데 적합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지정절차



**(4) 무역자동화사업의 단계적 추진**

가. 제 1 단계 : 초기개발 및 시범단계(1992)

무역자동화 추진환경 조성 및 기본설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설계 후 수출 관련 기본업무중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정상결제조건에 의한 신용장·D/A·D/P방식의 업무에 한하여 외국환은행, 선사, 보험회사, 무역업체중 일부를 선정하여 무역자동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나. 제 2 단계 : 중점개발 및 확산단계(1993~1994)

무역자동화 설비구축을 완료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전국적 확산을 통하여 무역관련 전업무로 확대운영한다.

다. 제 3 단계 : 정착단계(1995~1996)

시스템의 증설 및 유지관리와 해외 네트워크 연결을 확대한다.

**(5) 전자문서 표준화 적극추진**

한국EDIFACT위원회 및 산하 전자문서 개발 작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전자문서 개발·보급 및 사용을 확대하고, 아시아EDIFACT이사

회와 UN/ECE WP.4에 적극 참여하여 전자문서의 표준제정방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무역자동화사업의 원활한 지원**

무역자동화는 주변환경의 정보화기반이 확충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집중적인 계몽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정사업자가 교육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무역유관기관과 무역업체의 W/S 운영요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또한 무역자동화망의 이용자인 무역유관기관과 무역업체가 안심하고 무역정보의 전송처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무역자동화사업자의 내부감리와 외부감리를 강화하며, 특별법에 근거하여 컴퓨터 화일의 위조·변조 및 이를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무역자동화망에 의해 유통된 무역정보의 보안을 강화한다.

**(7) 추진실적**

- 1991. 1. 25 : 한국EDIFACT위원회(KEC) 구성
- 1991. 4. 15 : 아시아EDIFACT 이사회
- 1991. 7. 15 : 「무역업무자동화추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1991. 9. 25 : 법률안 제15차 경제장관회의 의결
- 1991. 10. 24 : 법률안 제51회 국무회의 의결
- 1991. 11. 1 : 법률안 국회제출
- 1991. 12. 16 : 법률안 국회의회결
- 1991. 12. 31 : 「무역업무자동화추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공포
- 1992. 2. 15 : 시행령안 입법예고
- 1992. 3. 6 : 한국무역통신(주) 설립
- 1992. 5. 1 : 시행령안 경제장관회의 통과